

# 각국의 石油稅制와

## OPEC 동향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OPEC(석유수출국기구) 국가들은 OECD 국가들의 환경세(탄소세)부과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선진국이 탄소세의 형태로 석유에 과세를 하게되면, OPEC측은 대항조치를 취해 석유공급의 안정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92년 5월 OPEC 총회에 사우디 석유장관이 불참하고 가격지지파인 이란의 행동을 제약하지 않아 사우디가 탄소세에 반대하기 위해서 석유정책을 변경하고 가격상승을 용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었다.

〈표 - 1〉

탄소세에 대한 OPEC 국가들의 주장

'91. 9. 24~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PEC 감시위원회, 탄소세에 우려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C의 고과세에 반발, 환경악화 주범은 선진국이라고 주장</li> </ul> </li> </ul>
'91. 11.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우디 경제인 파르크 아가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PEC 노선수정을 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PEC는 기본적이고 장기적으로 수요를 유지하는 수단 강구</li> <li>· 가격인상 위해 공급 감소</li> <li>· 소비국은 수요관리, 감소가능, 환경문제로 석유과세하여 수요관리 강화</li> </ul> </li> <li>- EC 과세액이 OPEC 收入액보다 많음</li> <li>- G7은 '90년 과세수입 24.36\$/B, OPEC의 CIF 가격은 22.86\$/B.</li> <li>이탈리아 세율은 270%, 프랑스 254%, 영국 200%, 日本 112%.</li> </ul> </li> </ul>
'92. 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브르트 OPEC 사무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C 탄소세의 근거는 환경보전보다 재정수입 확대</li> </ul> </li> </ul>
'92. 3.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브르트 OPEC 사무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국의 일방적인 과세보다는 전세계적인 도입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적인 균형이 이루어진 탄소세 창설이 필요. 개도국의 환경오염대책은 기대불가능.</li> <li>탄소세 도입되면 선진국의 수요압박, 석유가격 상승이 없으면 개도국 수요 폭증.</li> </ul> </li> <li>오염은 개도국에, 석유수출국은 수익악화, 개발투자 미흡, 석유시장 불안정.</li> </ul> </li> </ul>
'92. 5.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제르 사우디 석유장관, EC-GCC 회의(제3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과세로 CO<sub>2</sub> 억제효과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C의 석유과세는 '85년 이후 연평균 5% 상승. 1인당 CO<sub>2</sub> 배출량은 연 1% 비율로 증가.</li> <li>석탄 소비비중은 계속 증가</li> </ul> </li> <li>- 석유과세 정책의 영향 큼. EC 세수도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에 과도하게 과세하고 석탄에는 보조금 지급하여 수요 전환, 석유가격 양등 억제.</li> <li>· 탄소세로 소비국의 세수 증가. 발전도상 산유국 수입의 3배 이상을 소비국은 과세</li> <li>· EC의 원유(CIF '91년) 가격은 20달러/B, EC 과세액 56달러. 석유제품에 대한 과세로 얻은 EC의 세수는 2,100억 달러(소비량 103억배럴). 산유국 수입은 640억 달러에 불과함.</li> </ul> </li> </ul> </li> </ul>

이하에서는 OPEC 국가들의 탄소세에 대한 반대와 또 선진국의 탄소세 부과와 그 세수내역을 살펴보고 향후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 1. OPEC의 입장

OPEC 회원국들은 OECD 등 선진국에 의한 탄소세 구상에 대해 특히 '91년 후반부터 빈번하게 반대의 발언을 하여 왔다. 그 동안의 주장을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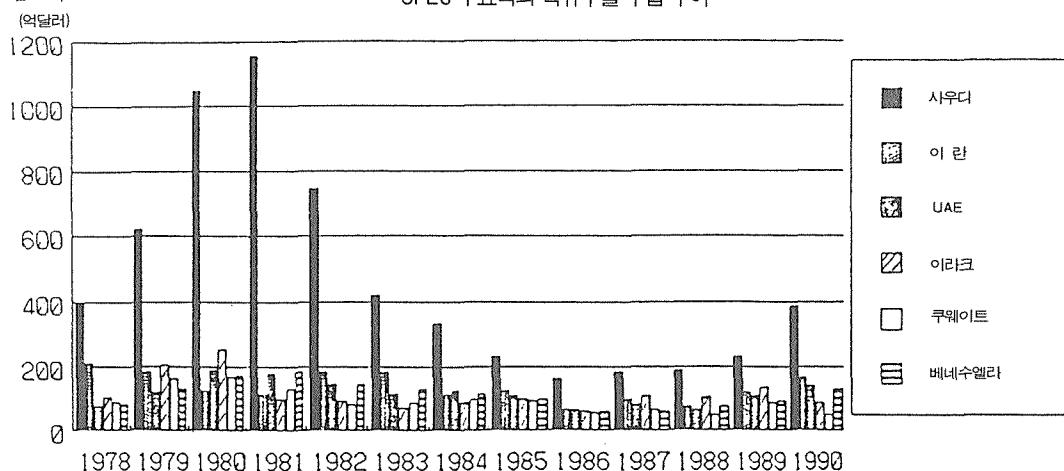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유공급 증가의 장애 발생 - 우호관계에 악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세 과세가 시행되면 석유시장은 불안정하게 되고 산유국의 공급증대를 위한 투자를 방해함. 단일상품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사우디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소비국이 취하면 그 소비국과의 우호관계는 장래에도 저해받음.</li> </ul> </li> <li>- 환경문제의 중요성은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유국도 환경문제에 긍정적인 해결책 강구. 탄소세를 과세하는 쪽이 세계경제 성장과 발전도 상국의 경제를 저해, 무연 휘발유 보급 등 산유국에도 소비국에도 도움이 되는 방책이 필요.</li> </ul> </li> </ul>
'92. 5. 2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本, 사우디 협동위원회, 아다르 사우디 기획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수요의 억제에 관련하여 환경세 구상에 강한 우려를 표명. 경제협력 안전에 우선하여 환경세 문제를 취급하도록 요청. CO<sub>2</sub> 발생량을 삽감하는 석유생산, 이용기술의 공동연구 작업 착수 요망.</li> </ul> </li> </ul>
'92.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가자데 이란 석유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세에 대응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세는 산유국에 대한 간접, 대응조치로 유가인상도 OPEC의 선택 수단</li> </ul> </li> </ul> </li> </ul>
'92. 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제르 사우디 석유장관, 지구서미트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우선언과 아젠다 21은 환경과 개발의 양분야에서 세계의 지침</li> <li>· 환경문제 해결책은 개도국의 필요와 세계경제를 고려한 공정하고 균형잡힌 것이어야 함.</li> <li>· 석유에 과도하게 과세되면 세계무역은 불균형하고 불공정함.</li> </ul> </li> <li>◦ 동 수브르트 OPEC 사무총장 지구서미트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방국가들의 에너지정책은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임을 소비국은 염두에 두어야 함.</li> </ul> </li> </ul>

이상과 같이 OPEC 주장은 선진국의 석유과세가 모두 거액이고, 그 금액은 OPEC 석유판매액을 초과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세액에 더하여 환경에의 공헌하는 명목으로 석유에 과세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OPEC는 주장하고 있다.

〈그림-1〉은 OPEC의 석유수출입규모의 추이이다. 美달러貨로 보면, 석유수출 수입액은 '86년경의 저하시점과 비교하면 회복경향이 있지만, '80년 전후시점과 비교하면 각 국은 收入이 감소하고 있다.

〈그림-1〉

OPEC 주요국의 석유수출 수입 추이



## 2. 선진국의 석유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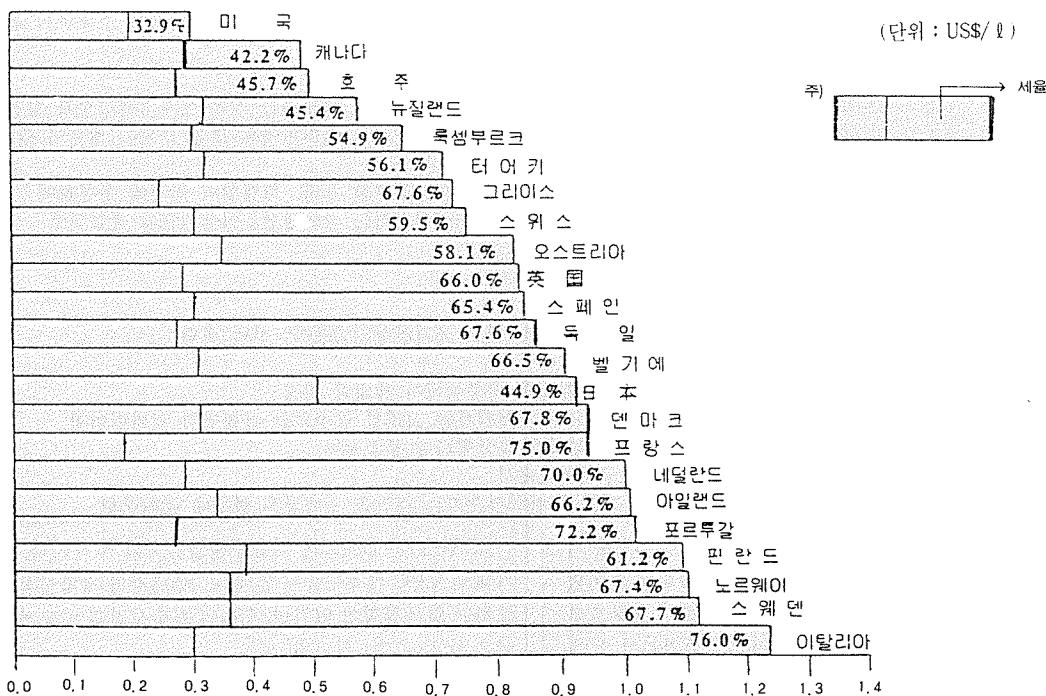
〈표-2〉

선진국의 세입과 석유세수액 ('90년도)

	일본(지방세제외)	미국(연방세종)	영국	프랑스	독일
(1) 국세수입 (달러환산)	627,798억円 4,336억 \$	6,242억 \$	1,593억 파운드 2,756억 \$	13,950억 프랑 2,560억 \$	4,745억 마르크 2,929억 \$
(2) 석유관련 국세수입 (달러환산)	관세휘발유세 등 30,644억円 212억 \$	석유관련 연방세 142억 \$	탄화수소세 93억 파운드 167억 \$	석유소비세 1,143억 프랑 210억 \$	석유세 332억 마르크 205억 \$
(1)/(2)	4.9%	2.3%	6.0%	8.2%	7.0%

&lt;그림-2&gt;

OECD 국가의 휘발유가격과 세비율('91년)



<표-2>는 OECD 국가의 석유과세에 의한收入이다. 각국도 세수총액 중 일정금액을 석유과세액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유럽국가들이 높은 것이다. 이것은 세수액에 점하는 간접세 비율이 유럽국가들이 높고, 직접세 비율이 높은 美國, 日本과 세수구조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실제 석유과세액이 매우 고을인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림-2>에 있는 것처럼 OECD 국가들의 휘발유 소매액에 대한 과세액의 비율을 보면 특히 현저하다.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이탈리아에서 소비자가격은 76%가 세액이고, 이어 프랑스는 75%가 된다. 나머지는 OPEC 생산비, 석유회사 비용이다. 유럽국가들은 석유를 매력적인 과세대상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 (1) 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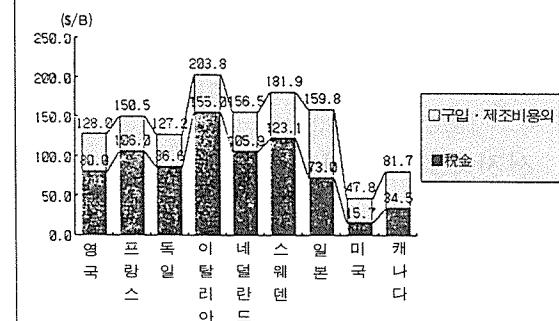
수입관세를 EC 국가들은 원유, 중간제품에는 부과하지 않지만 제품에는 일반적으로 3.5% 또는 6%를 과세하여 각국의 수입이 아니라 EC 공동체 재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EFTA 및 일정한 계약을 한 사우디, 쿠웨이트 등의 국가들로부터 수입과 아울러 황분 0.2% 이하의 경유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과세 제외규정에 따라 '84년 과세된 석유제품은 전체의 20%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주요 석유제품(3종류)에 관한 EC 각국에 의한 수입수량 한도 규정이 정해져, 제도로서 수입 수량제한이 존

재하고 있다.

EC 제국은 석유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의 <표-3>과 <표-4>는 유럽의 주요국가의 석유소비세와 부가 가치세의 개요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3>과 <그림-4>는 EC 주요국 및 日本, 美國, 캐나다의 석유제품(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유)의 소매가격과 과세액을 표시한 것으로, 특히 휘발유는 유럽제국의 과세에 의한 금액이 아주 높다.

### <그림-3> 각국의 휘발유 판매가격과 세금('91년)



### (2) 美國

관세는 원유에 대해 API 25도를 경계로 배럴당 10.5센트 또는 5.25센트가 부과되고 있다. 제품에 관해서도 일반적

〈표 - 3〉

유럽 주요국의 석유소비세 개요 ('92년 제1/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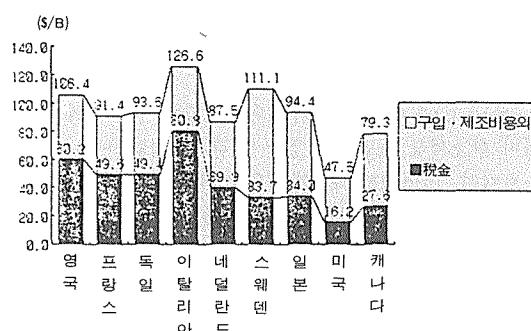
영 국	독 일	프 랑 스	이 탈 리 아
세금명 과 세목적	탄화수소유세 일반재원의 확보	석유세 일반재원 및 교통·에너지정책 재원의 확보	석유소비세 일반재원 확보
납세자	수입자·제조자·보세 창고업자	좌동	좌동
과세대상및세액 회발유	파운드/리터	마르크/리터	프랑/리터
유연고급	0.2585	0.92	3.23
무연보통	0.2241	0.82	2.86
무연고급	0.2241	0.82	N.A.
자동차용경유	0.164	0.54	1.47
가정난방유	0.013	0.14	0.37
산업용경유	0.013	0.08	0.37
	파운드/100톤	마르크/톤	프랑/톤
산업용중유	9.2	30	117
전력용중유	8.2	55	117
면세규정	수출용, 석유화학용, 선박용외	수출용, 정유공장자가 소비용, 항공기 선박 연료 공식사업용	수출용, 석유화학용, 항공, 철도, 산업용

〈표 - 4〉

유럽주요국의 부가가치세 개요

영 국	독 일	프 랑 스	이 탈 리 아
부가세(표준세율) '91.10.1. 현재	17.5%	14.0%	18.6%
석유에 대한 과세			
경감, 면제	일부해당	일부해당	없음
환급			
산업, 상업, 농업에 소비된 석유제품, 수출용 제품에 따라 각국은 각각 환급규정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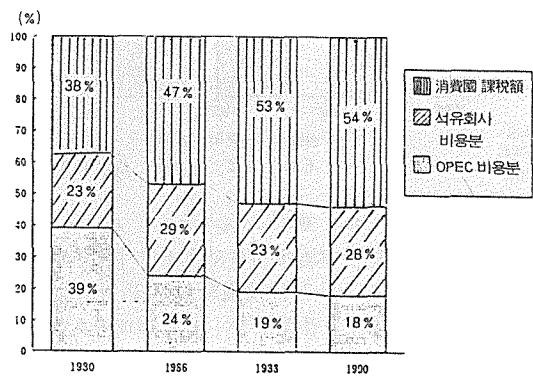
〈그림 - 4〉 각국의 자동차용 경유의 판매가격과 세금 ('91년)



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석유소비세로서 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유에 부과되는 금액 ('92년 1월 현재)는 연방 및 주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 5〉 서유럽제국의 제품판매가격 내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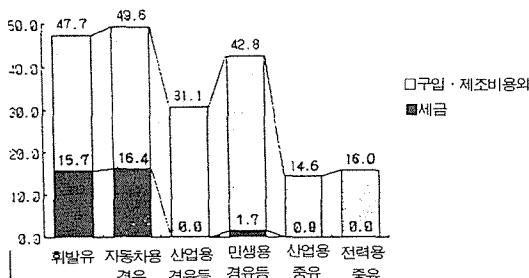
(단위: 센트/리터)

	휘발유	자동차용경유
연방	3.73	5.31
각주평균	4.90	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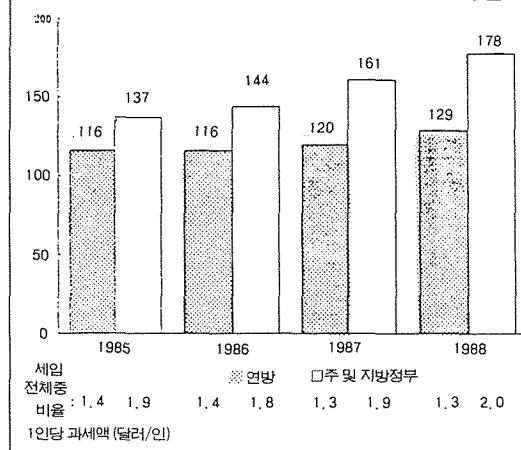
연방세, 각주의 세는 동시에 인상되는 경향이 있고 연방세는 '90년 12월에 휘발유, 자동차용 경유가 동시에 1.32센트 상승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1리터당 금액은 EC 국가에 비해 소액이며 소매가격에 점하는 세액은 1/3(32.9%, '90년)에 달하고 있다.

美國에서 각주가 지난 헌법과 법령에 따라 재정제도도 각주가 정하고 있어 세명칭도, 세액도 주마다 다르다. 세액도 휘발유를 예를 들어 보면 알라스카주, 조지아주의 2센트부터 코네티컷주, 위스콘신주의 6센트까지 다양하고 많은 주에서는 이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면 일반소비세는 공제되지만, 캘리포니아주 등의 12개 중에서는 주의 일반 소비세가 아울러 부과되고 있다.

〈그림-6〉 美國 석유제품 가격과 세금('91년)



〈그림-7〉 美國의 휘발유세, 자동차연료세 수입



〈그림-6〉은 '91년의 美國에 석유제품 소비자가격과 세액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7〉은 美國의 연방 및 각주의 휘발유세, 자동차연료세의 수입액의 추이이다. 절대액으로서의 세수액도 1인당 과세액도 상승경향이 있다.

### (3) 日本

석유에 대한 과세의 총액은 '84년부터 3조円을 초과하였고, '92년 예산에는 4조円을 초과하였다. 이 세수액은 국가, 지방의 도로정비, 자원개발, 대체에너지 대책에 이용되고

있다.

〈그림-8〉은 日本의 석유과세 개략도인데 日本의 석유과세는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석유 제품마다 과세액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체계가 이 과세액에 의해 형성되어 온 면이 있다.

관세는 원유 및 석유제품에 일부를 제외하고 부과되고 있다. 관세율심의회는 무관세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또 석유기업 등의 여러 단체로부터 그 저감, 무세화가 요망되어 왔다. 관세에 관해 '92년부터 5년마다 2단계씩 인하하는 계획이 세워졌지만 2002년 4월에 잠정세율을 폐지, 실행세율의 무세화가 될 예정이다. 그러나 원유관세의 사용용도가 석탄산업 재건의 목적에서 석탄 산지의 진흥이라는 일반재원에 의한 시책으로 변화하여 무세화가 보다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석유산업측에서 주장하고 있다.

석유소비세로서는 개별소비세가 석유세 및 각 제품별 석유가스세, 휘발유세, 경유거래세, 항공기연료세로 부과되고, 그후 일반소비세 3%가 아울러 부과되는 제도가 되고 있다. 개략은 〈그림-8〉에 기록된 대로, 석유소비세의 4조円중 80%가 도로정비에 충당되고 있는 것에서 특정재원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2년도 예산을 보면 도로정비 사업비 11조1천억円의 30% 이상이 석유세로 조달되고 있다.

휘발유 가격 중 석유세가 차지하는 금액은 대략 '92년 5월 현재 소비자가격 128円에 대해 휘발유세 53.8円, 원유관세 0.32円, 석유세 2.04円, 소비세 3.73円으로 합계하면 59.89円이고 부담율은 약 47%가 된다.

이상 EC, 美國, 日本의 석유과세 현황을 보았는데, 천연가스, 전력과 비교하면 〈그림-9〉와 같이 석유, 특히 휘발유는 각국의 구매력에 따라 비교하는 경우 과세영향이 크고, 특히 美國과 그의 국가들에서 큰 구매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 3. EC의 탄소세 부과

〈표-5,6〉은 EC 위원회가 제안하고 있는 탄소세의 개략과 이미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는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과세개략을 말한 것이다.

명목적인 금액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 네덜란드에서는 세수를 환경대책에 충당하고 있지만 비교적 고액의 과세액이 부과되고 있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는 일반재원으로 삼고 있다.

현재의 탄소세 도입 유통임도 유럽각국의 재정적자, 세입부족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기 쉬운 새로운 세금의 도입을 추진한 면도 있다.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는 특히 환경조화형 사회를 어떤 형태로 달성할 것인지 그 지출용도가 주목된다.

&lt;표 - 5&gt;

EC 위원회의 탄소세안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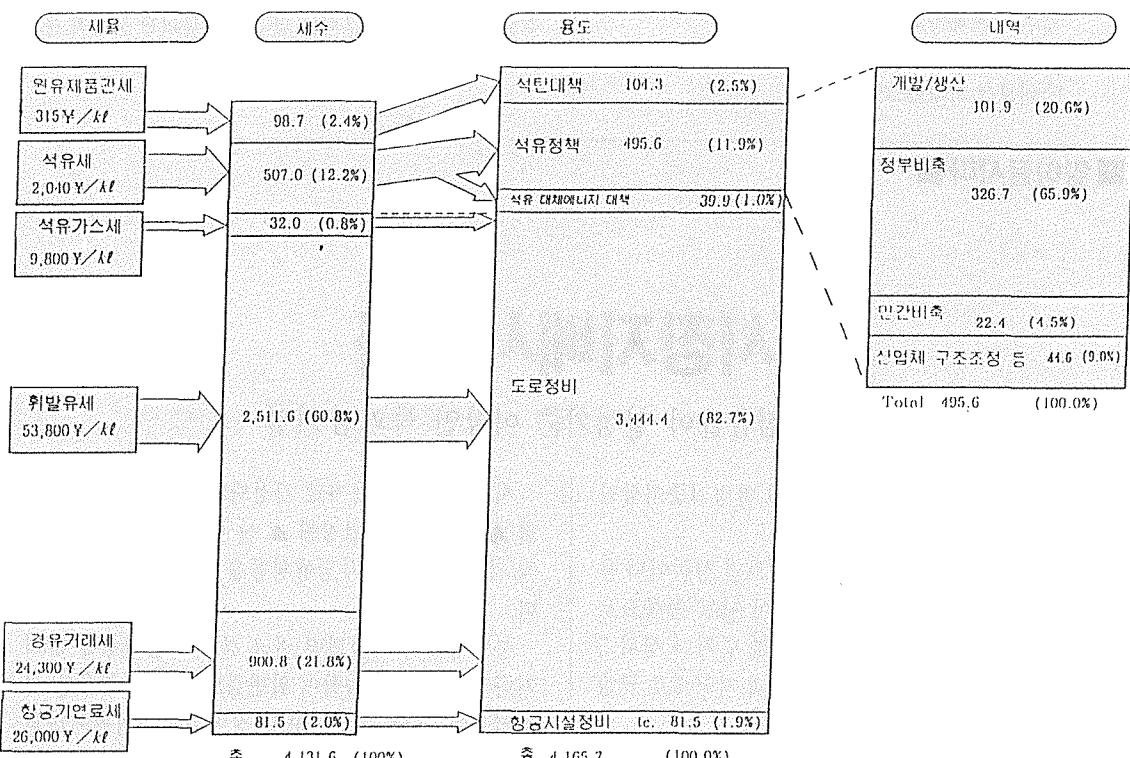
1. 과 세 대 상	재생가능 에너지 이외의 전에너지
2. 도 입 시 기	'93년 1월 1일부터 2000년까지 단계적 인상 석유 : '93년 3\$/B, 매년 1\$/B씩 상승, 2000년에 10\$/B
3. 에 너 지 별 과 세 액	(2000년 석유환산 \$/B) 석유 : 10, 석탄 : 14, 천연가스 : 7, 원자력 · 수력 : 5
4. 과 세 규 모	500~600억\$(추정)
5. 과 세 방식	EC 각국이 정수. 에너지 다소비산업에 특례, 과세액은 에너지세 50% CO <sub>2</sub> 세 50%

&lt;표 - 5&gt;

EC 위원회의 탄소세안의 개요

핀 란 드	'90년 1월부터 화석연료 대상(수송용 제외). 소액, 일반재원
네 텔 란 드	'90년 2월부터 화석연료 대상, 소액, 환경대책
스 웨 덴	'91년 1월부터 화석연료 대상(파드, 폐탄물 면세). 일반재원, 세입 중립, 고액이지만 전력, 에너지 다소비산업에는 면제, 경감규정 마련
노 르 웨 이	'91년 1월부터 화석연료 대상, 세입 중립(소득세 감세 실시)
덴 마 크	'92년 5월부터 화석연료 대상, 소액

&lt;그림 - 8&gt; 日本의 석유세 수입과 용도 ('92예산)



#### 4. 쟁점과 향후과제

OPEC 국가들은 '92년에 들어와 환경문제에 의욕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다음과 같은 환경회의를 개최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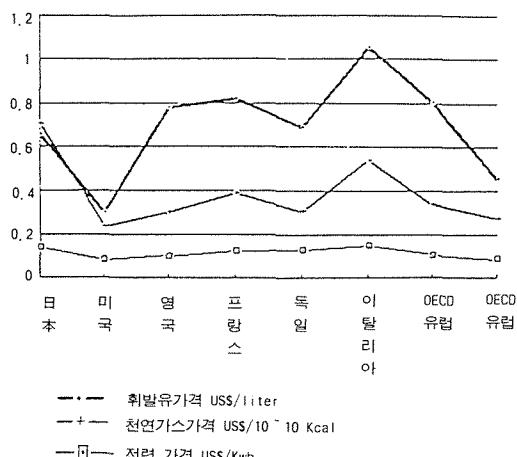
4.13~15

- OPEC 환경회의(빈)

지구환경 서미트에 대한 산유국의 공통인식형성을 목적으로 함.

4.23 -에너지와 환경보호에 관한 각료급 국제회의(빈)

〈그림-9〉 구매력으로 본 각국의 에너지가격 ('91년)



OPEC, 중국, 멕시코, 말레이지아, 노르웨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의 독립적 석유수출국(IPEC)이 참가.

산유국 결속강화 추진

7. 3 - OPEC 국가 기타 산유국, 소비국, IEA, UN 등에 의한 각료급 회의(노르웨이)

환경문제에 대한 OPEC의 반발, 의견교환 추진에 합의

선진국은 세수를 증대시키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고, 그 뒤 온난화 대책에도 유효한 환경 조화형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여겨 환경세의 도입에는 긍정적인 국가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을 저지할 만한 이론이 OPEC에서 제시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OPEC로서는 단결하여 가격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불확실하다. 그리고 독자적인 환경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선진국에서의 도입은 확대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탄소세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는 사정도 발생하고 있다. '92년 6월 지구 서미트에서 조인된 온난화 방지조약이 '93년 초에 발효되고,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주요 선진공업국(25개국과 EC) 및 CIS(11개국)은 자국의 온난화방지 행동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때 탄소세 도입이 제기될 것이고, 그 도입이념, 부과율, 사용용도, 사용방법 등이 제시될 것이다. 어쨌든 OPEC가 주장하는 석유파세 문제도 탄소세를 둘러싼 문제와 분리하기 어렵다. ♦

〈국제에너지동향, '92. 11〉

## ■ 알아둡시다 ■

# 시장지배사업자

市場점유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독과점 기업

시장지배사업자란 시장점유율이 일정기준이상인 독과점 기업을 가리킨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제4조)에 따르면 상품이나 용역의 연간 국내판매액이 300억원이 넘는 품목으로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이상인 물품과 기업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특정품목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독과점기업의 횡포로부터 소비자의 여타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81년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정고시는 매년초에 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가격 및 물량조절 ▲타사업자 영업방해 ▲신규참여방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등을 별도로 규제 받게 된다.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권고 경고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며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엔 사법기관에 고발,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 돼있다.

지난 81년 102개사(42개품목)가 처음 지정된以來 지난 해에는 352개사(144개품목)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늘어났다.